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 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행위 위반 조사 거부 등의 행위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 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별표4, 별표5의2)
- 다. 제2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자의 투표권 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상향(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0/3119, 팩스 (044) 203 - 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